

2018년 광주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3. 7. ~ 3. 14.(6일간)
- 감사분야 : 2015년 3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계획						
			행정상 (건)		신분상 (명)			재정상 (천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천원)	시정	주의	징계	경고	주의	회수	과태료
15건	13건 (30명)	2건 (2,030)	6	9	-	3	27	30	2,000

II 주요 지적사항

■ (인사·행정)

①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 업무 소홀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8조(공사의 감독 및 검사)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시설 공사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공사요원의 정보통신 시설 내 출입 시에는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방○ △△△ 등 2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보안 서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외부공사요원 24명이 30회 소방정보통신 보안(제한) 구역에 출입하여 점검을 실시케 하는 등 소방정보통신 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출입자 대장만 기록)

【관련규정】·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8조(공사의 감독 및 검사)

② 직무수행태도 평정 시 경고 등 처분사항 미반영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제2항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1호]에 의하면 평정자는 직무수행태도 평정시에는 피 평정자의 무단지참, 무단결근, 무단 조퇴, 장기간 무단이석, 징계·직위해제, 경고, 주의, 대민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센터 소방○ ○○○○ 등 3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5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직무수행태도 “성실성 및 규율준수” 분야(1차 평정자 3점, 2차 평정자 3점) 평정을 하면서 6점 만점으로 평정하여 “경고 등 처분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함.

【관련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 (재난대응·안전)

①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미지정 등 업무소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본부 대응구조구급과 「불법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지정 및 교육철저 알림」 공문(2017.4.10.)에 의하면 각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장 이상으로(서별 여건에 맞게) 단속 담당공무원을 임명하고 법정교육 8시간을 자체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공무원 미지정, 정기교육 미실시, 자체계획 수립 후 미이행 등 업무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주차·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② 신·증축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 실시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화재경계지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대형화재취약대상은 연 1회 이상,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년에 1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필요시에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하여야 하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 조사는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축 공사로 소방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추가 실시 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음에도, 신·증축 소방대상물 ‘◇◇◇◇개발(주)’ 등 5개소에 대하여 각각 35개월 ~ 4개월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관련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 (예산·회계)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위배 등 업무처리 부적정

-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 하는 건설업종이나,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습식·방수공사업”은 아스팔트·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건축구조물 등에 방수·방습 등을 하는 공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안센터 외벽방수공사” 건은 1개 업종(방수 공사)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설업종이므로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 공사업” 등록업체로 발주하는 것이 적법함에도, 복합공사를 주종으로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업체인 ◇◇◇◇(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위배함.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종류) 및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예방·민원)

①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적격자 선임

- 제4류 위험물(제1석유류 포함)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 기능사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업체는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를 포함하여 지정수량 20배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인데도,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로 선임함.

【관련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데도, 관리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이 아닌 “☆☆☆ 건물”, “★★★ 건물”, “○○○ 건물”에 대하여 소방 안전관리자를 ☆☆☆ 1인으로 중복 선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처리함.

【관련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수범사례 1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확충

- ❖ 소화전 제수변 오작동 방지 및 도로공사 시 제수변 매몰 방지를 위한 소화전 제수변 도색 계획

문제점

- 소화전 주변에 제수변이 다수 존재하여 해당 소화전 제수변 오작동 가능성
- 도로공사 시 제수변 매몰로 인한 손실

중점 추진사항

- 신규 소화전 설치 및 기존 소화전 고장발생 시 광주소방서 표시된 제수변으로 교체
- 기존 소화전 제수변은 황색 도료 이용 도색작업 실시

<신설 및 고장발생 시 교체>



<기존 소화전 도색>



기대효과

- 화재발생 시 신속한 제수변 확인을 통한 소방용수 통제 가능
- 상수도과 소화전 제수변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오작동 방지
- 도로포장 공사 시 제수변 매몰 방지

수범사례 2 요양시설 '안전점검의 날' 운영

- ❖ 최근 발생한 제천, 밀양 화재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 요양시설의 맞춤형 피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함.

추진배경

- 유사시 노인요양시설 특성상 수용자보다 종사자의 역할이 중대
- 요양시설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미비
- 겨울철 노후 관창 사용으로 소화수가 흘러 빙판 안전사고 우려와 현장대응력 저하

중점 추진사항

- 매주 월요일을 '요양시설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캘린더 배부
- 안전점검의 날 CD 제작 배포(안전방송음원, 응급처치가이드, 소방시설교안)
 - 추진기간 : 2017.12.21. ~ 지속 추진 중
 - 추진실적 : 요양시설 36개소
- 요양시설별 방문 안전컨설팅 실시



기대효과

- 유사시 종사자의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
- 자율적이고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효과